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 보완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16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 보완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2024. 7. 31.
3. 회부연월일: 2024.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위하여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학교장이 위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미흡한 경우에도 피해교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 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 보완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미흡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20조제6항, 제2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u>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u>	⑤ <u>제4항</u> ----- ----- ----- ----- -----.

<신 설>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생 략)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 ③ (생 략)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

제7항-----

-----.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0조제4항-----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지역교육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

④ (생 략)	리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청과 학교의 장이 즉시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그러나 해당 조치가 지체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해위에 노출되고, 조치가 미흡한 경우 피해교원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

이에 개정안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지체되거나 미흡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1)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 요청
(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은 관할청과 그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에 대하여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 제20조제3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 또는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관계 기관 신고를 통보를 받아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리는 경우,²⁾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관할청과 학교의 장에게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관할청과 학교의 장에 대하여 이미 부여된 조치의무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 「교원지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회의 소집, 심의, 의결 등 심의절차 이행 이후에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교원지위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³⁾ 해당 조치의 요청을 위해서는 이를 심의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교육부: 신중 검토 필요**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와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를 실행하고 있음.
- 또한, 「교원지위법」 제25조와 제26조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 학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우선 인지하게 되므로 개정조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원지위법」 제27조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며,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 검토 필요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사결정을 위한 소집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소집을 위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인지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현행법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직접 요청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며 교육장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중 검토 필요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안 발생 후 즉시 취하는 조치가 아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후 피해교원 조치로 수용 가능함.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중 검토 필요 -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을 인지한 학교장이 신속히 분리조치하도록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한 사항으로 교권 침해 여부 심의 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로 보기에 타당하지 않음.

② 학교의 장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시정 요구(안 제20조제6항 신설)

현행 「교원지위법」 제20조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의 이행 의무,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 제20조제6항은 학교의 장이 이행한 조치가 미흡한 경우 이를 보고 받은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교원에게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교육부: 신중 검토 필요 -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피해교원이 충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7조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전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미흡한 조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학교의 장이 각 사안의 상황의 특수성 및 맥락을 반영하여 시행한 조치에 대한 관할청의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의 어려움. - 이에, 피해교원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에 대해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정조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정 수용 - ‘관할청의 권고조치’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추가조사 혹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에서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학교장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중 검토 필요 - ‘관할청이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각 사안마다 상황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므로 관할청에서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

③ 신고받은 기관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직접 알림(안 제28조제 4항 신설)

현행 「교원지위법」 제28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고(제1항), 신고받은 기관은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며(제2항), 소속 학교의 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르면 신고받은 기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였음에도, 학교의 장이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됨.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신고받은 기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직접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하여, 학교의 장에 의한 지체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 이행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신고받은 기관이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개정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교육부: 신중 검토 필요**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받은 관계기관에 학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신고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교원지위법」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고 있음.
- 또한, 학교의 장이 신고받은 관계 기관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청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관계기관에서 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의무를 추가 규정한다면 학교 및 관계 기관의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교원지위법」 제27조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 은폐를 금지하며,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 검토 필요 - 「교원지위법」 제27조에서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및 은폐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고절차를 만드는 것으로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형성에 긍정적이지 못하며, 사안 처리 과정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 신중 검토 필요 - 관계 기관이 학교장에게 통보할 의무 이외에 기관이 학교의 교보위 접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추가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관계 기관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며, 학교폭력사안과 다르게 실제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관계 기관 접수가 많지 않기에 해당 조문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